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2. 04. 04(수)
의원정수 : 11명	출석의원 : 9명

1. 회의일시 : 2012. 04. 18.(수) 오후 5시

2. 회의장소 : 9동 2층 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정현준,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이기육, 조현범, 김선국
나. 불참의원 : 김종기, 한상덕

4. 회의안건

가.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건
나. 학칙개정의 건
다. 2011회계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5. 회의내용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포하다.

(의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학평의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건과 제2안 “학칙개정”의 건, 그리고 제3안으로 “201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건에 대해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김익진입니다. 제1안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 설명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선국) 의장님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학연금의 내용으로 심의가 아니고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내역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운영하는 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 몇 %이고 수익의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다.

(김익진)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부담액은 결산액 기준으로 대학 법정부담금의 100%부담해야 하는 확정금액입니다. 저희가 확정금액 전체를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종전에는 대학의 운영상황에 따라 100%를 부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값 등록금 등의 이슈에 따른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가 대두되어 2012년 1월 26일부터는 법정부담금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되었으며 이를 미증족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강오) 2012년 12월 26일 신설된 법령을 보면 "학교경영기관"이란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신 서류를 보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7% 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서 최소한의 법인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출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과부에서는 "대학의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이것을 보고 승인한다"라는 의미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법인의 임대수입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당기순익에 따른 개선계획이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김익진) 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지금 보면 승인요청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WCC로 선정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못 낼 정도가 된다면 타당한 개선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법인에서 내기 어려우니까 대학에서 부족금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어떤 부동산에서 당기순익이 어느 정도이고, 이만큼 부족하니까 대학에서 부족금을 충당해 주고, 향후 개선계획이 나와야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의 향후 절차과정을 보면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에 대한 정보공시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익진) 사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임대빌딩을 제외하고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용 빌딩도 2008년도 까지는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임대료 수익이 다소 있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빌딩의 공실율이 크게 늘어나 임대 수익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노력으로 수익용 빌딩의 임대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강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승인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대학들이 똑 같은 문제에 봉착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승인신청을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했을 때, 예결산 점검실사가 내려온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익진) 네, 수익용 기본재산의 개선계획을 추가로 보완하여 승인요청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법정부담금 승인 심의 건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제출하는 학교의 자료를 보완하고 법정부담금 개선계획 및 수익창출 노력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다음은 제2안으로 학칙 개정의 건으로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안녕하십니까? 교무과장 이은석입니다. 지금부터 대전보건대학 학칙개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학칙개정의 건과 관련하여 배포된 자료를 설명하다.)

(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제7조의 내용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부분이 지정형 교원을 말하는 것인지 채용형 교원을 말하는지 규정이 좀 모호하고요, 제17조 제②항이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의 입학자격이 삭제되게 되면 입학자격 조건이 전무하게 된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제26조의 편입학 기준이 "2학년 이상"에서 "총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40조 교수시간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시수를 30%를 감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기가 아닌지요..., 그리고 1998년 5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른 학칙의 경과조치를 보면 재학생과 졸업장 수여 등에 관한 조치가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번 경과조치에서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은석)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부분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 시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관련 내용은 교과부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정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학칙에 명기한 부분으로 문맥상의 모호한 부분은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관련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칙 제59조에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입학자격을 구분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제26조의 편입학 관련 조문은 우리대학이 사실상 편입학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재학생에 대한 부분과 졸업생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상세하게 경과조치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협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니다.

(이강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③항을 보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산학협력중점교원에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10년 이상이 된 사람이면 적급에 상관없이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은석) 산학협력중점교원 대기업의 임원이나 CEO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임원출신을 영입하여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자격조건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누구나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절차를 보면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지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해야 할텐데, 이미 채용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역으로 맞추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정관에 따라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거나 채용기준이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진행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꾸준히 재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학 차원의 컨트롤타워나 발전계획이 없다보니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보니 관련 규정의 정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오) 정관에 맞추어서 규정을 만들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서 차실히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 차원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은 꼭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평의회에서도 윤문도 과장께 중·장기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문도) 네, 현재 발전계획의 틀을 잡기 위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전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발전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보면 전임강사의 명칭이 사라지고 조교수로 통합이 되는데 대학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이은석) 네, 조만간 전국 전문대학 교무·학사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으로 대학별 제반문제를 공유할 예정이며 현재 대학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협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협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의장) 또 하나는 교원 책임시수의 문제인데 지금 12시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 정시수는 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대학이 WCC에 선정이 되면서 책임시수 12시간이 권고사항입니까?

(이은석) 교원의 책임시수는 전문대학기관인증평가 시 교원의 주당 평균시수가 기준시간 9시간이거나 평균시수 12.8시간 이하를 인증의 근거로 삼고 있어 우리대학은 현재 주당 책임시수를 12시간으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책임시수의 9시간 조정 문제는 향후 예산과 학과별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대학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의장) 그러면 제2안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3안 2011회계년도 교비결산(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 회계과장 황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교비결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이강오) 2011회계년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의 13쪽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2억 5천 예산에서 결산이 1억 9백만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입시관리비가 7억천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결산된 것은 5억 8천정도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절감의 결과인가요?

(황춘원)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과를 보며)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익진)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아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오) 지금 결산보고서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수당을 써야 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입시수당을 주어야 될 것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예산절감 쪽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과다라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수립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에 따른 예산을 세웠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용) 사무처장 강현용입니다. 제가 당시에 기획실장이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다 상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 총액에서 예산이 약간 여유있게 짜여진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시수당 같은 부분은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의아해 했던 부분인데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오바해서 잡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황별로 계속 추경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8%~10% 정도는 여유있게 가보자. 특히나 인건비 부분은 예측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명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임차보증금이 당기와 전기를 비교했을 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춘원) 네, 임차보증금이 증가한 원인은요..., 조금전 PPT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콘도회원권 구입과 외국인 교수의 편익증진을 위한 숙소임차료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강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관련 지침은 어디에서 마련하고 있나요?

(강현용) 지금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만들어 배포를 했고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전체 교직원에게 공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강오) 그리고 외국인교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숙소임차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황춘원) 네 외국인 교수 아파트 임대부분입니다.

(이강오)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 가지고 이 분들의 아파트 임대가 가능한가요?

(강현용) 아파트라기 보다는 원룸형태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은석) 네, 내부지침은 마련은 되어 있고 결혼 유무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오) 24쪽에 건설가계정을 보게되면 금액이 변동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황춘원) 건설가계정 부분은 먼저 강의동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비 변동 부분이 집행되었 그렇습니다. 감소원인은 당초 연수원 건축계획이 중단되면서 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강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입안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예산수립을 보면 전년대비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을 확정하고 명확한 검토를 하셔서 보다 더 체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학의 규정이나 운영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고 기획실에서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 오랜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숙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2011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이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18:50분 산회)

2012년 4월 18일

대 전 보 건 대 학 평 의 원 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